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8항의 개정(‘23.8.16., 시행:’24.2.17.)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분과(이하, “분과”라 한다)의 위원 자격·

임기 등 구성·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(안 제5조의4제1항)

–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에는 우선으로 적용해야할 항목(분과위원장, 안전 등)을 별도로 규정(안 제5조의4제2항)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8항의 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과로 편입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·임기 등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

2) 이와 관련,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내용 등 성격과 위원의 전문분야가 중첩되는 것을 감안,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따르도록 규정

나. 심의위원이 특정 심의·의결 대상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 등에 해당되

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당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의2제4항)

- 1) 재해영향평가심의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안전에 대한 관련자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법 제4조제9항”을 “법 제4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”를 ““심의위원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항,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중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해당 재해영향평가등”을 “해당 재해 복구사업 및 재해영향평가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

사유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,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심의위원회”는 “분과위원회”로 “위원장”은 “분과위원장”으로 “부위원장”은 “분과부위원장”으로, “위원”은 “분과위원”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은 다음 각 호를 우선 적용한다.

1.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.
3.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검토한다.

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”을 “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”으로 한다.

제41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법 제55조제9항”을 각각 “법 제55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·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·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

하지 아니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

----- “심의위원회”-----

-----.

② 심의위원회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-----

-----.

⑤ 심의위원회-----

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계획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~ 4. (생략)

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⑥ 심의위원회-----

-----.

⑦ -----
-----.

----- 심
의위원회-----

-----.

⑧ -----
심의위원회-----

-----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-----

심의위원회 -----
-----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 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 안건”이라 한다)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~ 4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1. -----

----- 해당 재해복구사업 및
재해영향평가등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전
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에 따
른 제척 사유 등에 해당되어 공
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
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
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제
외할 수 있다.

제5조의4(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,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
이 경우 “심의위원회”는 “분과

위원회”로 “위원장”은 “분과위원장”으로 “부위원장”은 “분과부위원장”으로, “위원”은 “분과위원”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은 다음 각 호를 우선 적용한다.

1.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2.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.

3.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검토한다.

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41조(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

제41조(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

통보 등) 재난관리책임기관의
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
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
상황을 점검하고, 그 점검 결과
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·도
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41조의2(재해복구사업 중앙합
동점검반 등의 구성·운영 등)

①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
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
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
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
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
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
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
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
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
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
제9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
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

통보 등) -----

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1조의2(재해복구사업 중앙합
동점검반 등의 구성·운영 등)

① 법 제55조제10항-----

② ----- 법 제55조
제10항-----

③ ----- 법 제55조
제10항-----

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 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69